



1. 시행령

- 가.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- 나.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

1. 시행령*

가.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(2016/4/26 개정, 2016/4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경영여신업자에 은행, 종합금융회사 외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함

2) 주요 내용

- 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경영 허용 (제3조 제1항 제5호의2)
 -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경영여신업자에 은행, 종합금융회사 외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

나.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(2016/4/25 개정, 2016/4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‘부채감소·노후보장·주거안정’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‘내집연금’ 3종 세트 출시 (2016/1/14 대통령 업무보고, 2016/3/21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)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함

* 해당 내용은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2) 주요 내용

-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%에서 70%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을 제고 (제3조의2 제1항 3호)
 - 부채가 있어,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